全事時 의정 子な性 의회

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건설환경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병준

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18년 10월 2일

나. 회부일자 : 2018년 10월 4일

3. 제안이유

「국가균형발전특별법」과「지방재정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조례 용어 현행화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 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가. 현행 조례의 용어를 일부 수정함(안 제2조, 제4조, 제6조, 제11조, 제 12조, 제13조, 제15조, 제18조)
- 나.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조항을 신설함(안 제13조의2)
- 다. 연임규정 수정(안 제15조제4항)
- 라. 위원의 위촉 해제 조항을 신설함(안 제15조의2)

5. 검토내용

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

○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규정한 「지방재정법」에 따라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,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조례 용어 현행화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반영하여 균형발전 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조항 등을 신설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지역균형발전 조례 제정 당시 '낙후지역'이라는 용어를 지역균형발전 사업이 3단계 추진 중인 점을 감안해 용어를 '저발전지역'으로 수정하 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을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함.
- 안 제13조의2에 신설되는 '특별회계의 존속기한'은 '14.5.28. 「지방 재정법」개정 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해야 하나 부칙으로 별도 조례에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아도 '18.12.31.까지 존속기한으로 본다는 부칙을 근거로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았으나, 금년 말로 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신설하였음.
- 안 제15조는 당연직 위원과 간사를 지역균형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과 부서장으로 변경하여 조직개편에 따른 불필요한 조례 개 정이 되지 않도록 변경하였음.

- 안 제15조의2는 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며.
- 안 제18조는 현재 충북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 및 권역별 연구팀 운영사항을 고려해 기존 연구전담팀 및 지역협력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사항이라고 사료됨.
- 기타 조항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, 입법 예고('18. 8. 16.~'18. 9. 5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.

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-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, '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'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- 다만, 안 제13조2 및 안 제15조2를 신설하면서 가지번호 체계를¹⁾ 준수하지 않아 수정이 필요함.

6. 검토의견

「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검토한 결과,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규정한 「지방재정법」에 따라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,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조례 용어 현행화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반영하여 균형발전 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조항 등을 신설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¹⁾ 가지번호는 '**제00조의0**' 으로 규정해야 함.